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정관은 본 회사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)

본 회사는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며, 동 분할로 인하여 본 회사에 이전되는 재산 및 그 가액 등에 대하여서는 2016년 3월 18일자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.

제3조(사업연도에 관한 특례)

본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정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)

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, 분할 전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단 제5조, 제6조, 제7조는 액면분할효력발생일(2017년 4월 28일 예정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의2, 제17조, 제18조 및 제24조의 개정은 주식•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
제29조, 제30조의2, 제36조, 제39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위는『스튜디오드래곤 주식회사』의 정관 임을 확인합니다.

2026년 3월 26일

스튜디오드래곤 주식회사

대표이사 장경익 (법인)